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0조의6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50조의6(정보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50조의 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 른 긴급점검의 효 율적인 운영과 체 계적인 관리를 위 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 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 청받은 도로관리청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u>	<u><삭 제></u>

	<u>따라야 한다.</u> <u>③ 그 밖에 제1항</u> <u>에 따른 정보시스</u> <u>템의 구축·운영과</u> <u>이를 활용한 업무</u> <u>처리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40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김희정 · 권영진 · 김도읍
최수진 · 이종배 · 박준태
김승수 · 김태호 · 백종현
김은혜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 ·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를 “보수”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u>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u>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 ----- <u>보수</u> ----- -----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u> <u>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u>

<신 설>

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신 설>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